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자산 투자성향과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2014년 8월)에도 불구하고 DC형 가입자들은 원금손실 불안감, 투자상품정보 부족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매우 소극적임. 따라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최소한도의 운용수익률은 보증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또한 투자운용상품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투자교육 중심 가입자교육(가입근로자의 78.3% 투자교육 미경험)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투자교육 가이드라인 명문화, 투자교육 법적 책임 강화, 전문화된 퇴직연금교육 센터 도입 등)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정부는 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년 8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투자자산 선택폭 확대를 위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정부는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포함)의 위험자산¹⁾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함
 - 그럼에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적립금의 78.9%(2016년 12월 기준)를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음
- DC형 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N = 600명),²⁾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에도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투자상품 정보부족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계획을 가입근로자에게 질문한 결과,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7.3%에 불과함(〈그림 1〉 참조)
 -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³⁾로는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86.4%), 투자상품 정보부족(44.7%) 등을 들고 있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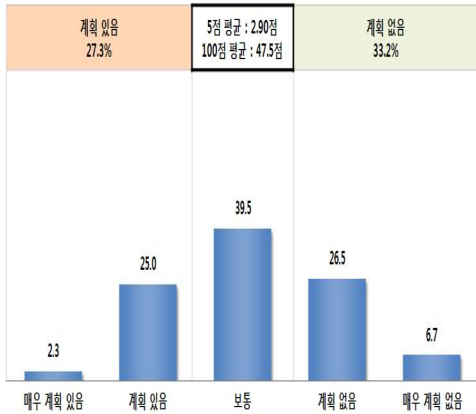
1) 위험자산은 주식, 펀드 등 운용리스크가 큰 실적 배당형 투자상품을 의미함

2) 보험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입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3)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퇴직연금 가입자 1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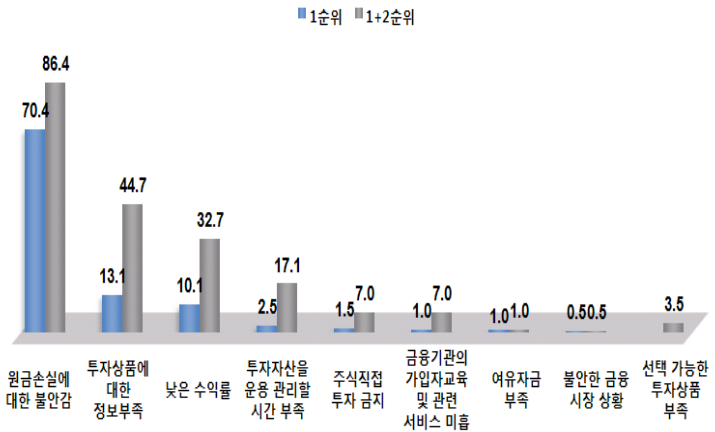
〈그림 1〉 위험자산 투자 성향

(단위: %)



〈그림 2〉 위험자산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자료: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6) 등을 기초로 작성

-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먼저,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예: 캐시밸런스형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⁴⁾
 - 예를 들어 DC형 가입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지만, 최소한의 수익률은 보증해 주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가입근로자의 안정적 운용 성향을 고려하여, 제도 초기에는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디폴트 투자상품을 설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투자운용상품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교육이 요구됨
 - 투자교육의 근본 목적은 가입자의 투자운용상품 이해도를 보다 향상시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이

4) 미국, 일본 등은 근로자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최소한의 수익률은 보장하여 주는 캐시밸런스(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도입함 즉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선택폭을 확대함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음

- 그러나 DC형 가입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N = 600),⁵⁾ 투자교육을 받은 가입근로자는 전체 가입근로자의 21.7%에 불과해 투자교육 경험이 매우 미흡함(〈표 1〉 참조)⁶⁾
 - 기업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계층 근로자의 투자교육이 미흡함

〈표 1〉 가입근로자의 투자교육 경험

(N = 600, 단위: %)

구분		Base	받음	받지 않음
전체		(600)	21.7	78.3
회사 규모	30인 미만	(300)	13.7	86.3
	30~300인 미만	(180)	21.7	78.3
	300인 이상	(120)	41.7	58.3
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74)	10.8	89.2
	200~400만 원 미만	(362)	21.0	79.0
	400만 원 이상	(164)	28.0	72.0

자료: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7) 등을 기초로 작성

■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의 보완조치 마련 차원에서 정부는 투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투자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명문화하고 투자교육 미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화된 퇴직연금 교육 센터의 도입 검토가 요구됨
 - 소득이 낮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일수록 투자교육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kiri**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7년 8월 설문조사한 결과임

6) 투자교육을 받은 가입근로자 중 42.3%는 투자교육으로 인해 투자운용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투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